

신구조문대비표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777호, 2023. 10. 4., 일부개정]	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]
제24조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) ① 기획재정부장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1.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.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. 1.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<삭 제>